

회(92. 7. 15) 상정의결

2. 청원요지

피해지역 주민의 재산세 감면, 양화진성당등 명소지역의 정서회복과 공해 요소제거, 지하철2호선 합정역-당산역 구간 수증터널 구축, 강변로 주택 지역 및 절두산 성지지역에 방음벽 설치, 공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

3. 취지설명 요지:없음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재)

가. 지하철과 자동차소음등 공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세 감면요구는 현행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강변로주변 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의 방음벽설치 요청과 지하철 2호선 당산철교 합정동구간의 전동차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해소책은 합정동 청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관련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다. 각종 공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음.

5. 질의답변요지:없음

6. 토론요지

홍선환위원: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 의견:별첨

합정동지역 공해로 인한 주민피해 해결청원의 건서

첫째, 강변로 주변주택 및 절두산 성지지역에 방음벽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둘째, 지하철 합정역-당산철교 구간에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철저히 지키면서 소음, 진동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봄.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

심사보고서

1992. 7. 20

1. 심사결과

가. 청원인 주소:마포구 상암동 747

성명:유명근 외 173인

나. 소개의원:권오범 의원

다. 접수일자:'92. 3. 6

라. 회부일자:'92. 7. 11

마.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사회) 제2차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청원요지

난지도 쓰레기장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녹지지구 해제, 부분 준공업지역보전. 농지전용 규제 완화, 부당정책된 공시지가가 수정보완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권오범의원)

청원인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청원은 상암동 지역 전반에 대한 복합청원으로서, 분야별로 차례로 보고드리면,

가. 난지도 쓰레기장의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92년 10월말 폐쇄이후의 활용방안은 현재 실시중인 전문용역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으므로 금년 연말부터 문제점에 대한 가시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사료됨.

나. 녹지지역 해제

'92년 10월말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난지도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재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택지개발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다. 상암동 9번지일대 부분준공업지역 보전

1976년 12월 9일 건설부고시 제197호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향후 상암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 지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라. 농지전용의 규제 완화

토지의 무단형질변경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며, 법적 형평성,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농지전용의 규제완화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대기 및 수질오염등으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을 감안, 지목과 용도지역의 변경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마. 공시지가의 수정보완

상암동지역 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은 건설부의 표준지가격이 조정되지 않는한 지가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매년 1월 1일 고지지가를 건설부장관이 공시하고 있으므로, 차기년도 관할 구청에서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적정한 지가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없음

6. 토지요지

김중열:본회위에 부의할 것을 동의

7. 심사결과: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9. 심사결과외의견:별첨

지역개발장애요인해소청원에 대한 의견서

1. 녹지지구해제 및 부분준공업지역 보전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원인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및 건설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기를 요청함.

2. 농지 전용 규제 완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서울특별시 및 검찰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3. 난지도 쓰레기장 조기철거 및 정화관리

-난지도 쓰레기장 폐쇄후의 정화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청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화관리 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4. 부당책정된 공시지가 수정보완

-매년 실시되는 공시지가 조사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청원인들 지역의 공시지가를 서울특별시청 및 건설부장관등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청원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을 마포구청장에게 요청함.

노고산동56번지일대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청원 심사보고서

1992. 7. 2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마포구 노고산동 56-16  
성명:유정호 외 241인

나. 소개의원:이종만의원

다. 접수일자:'92. 4. 1

라. 회부일자:'92. 4. 20

마. 상정일자: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청원요지

마포구 노고산동 49번지, 54번지 및 56번지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망

3. 취지설명요지

(소개의원 이종만 의원)

현장답사결과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망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청원건은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을 사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원하는 청원으로서, 상업지역의 지정은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구조와 기능상, 상업 및 업무기능의 직접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도시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상업지역이 계속 확산될 경우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침해하게 되고, 교통문제·지가양등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